

## 루터대 교목실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88조에 의거 설치되는 루터대학교 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 교목실의 업무와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① 교목실은 사무분장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직원 예배 및 학생 채플 운영
2. 채플 설교자 및 인도자의 선정과 배정
3. 대학의 각종 행사 예배 주관
4. 특별 신앙 강좌 운영
5. 학부 및 대학원 신학생의 교회실습 관련 업무
6. 교직원 및 학생 신앙상담
7. 교목실 및 채플실 관리 업무

② 교목실은 제1항의 업무 이외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.

1. 대학 내 각종 기독교 선교 단체 및 동아리 지원과 활동지도
2. 생활관 신앙 활동 지원
3. 지역교회와의 협력 업무
4. 대학 내외 선교활동
5. 기타 기독교 활동에 관련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① 교목실에는 정관 제88조 제2항에 의거 목사로서 보하여진 교목실장을 둔다.

② 교목실장은 교목실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교목실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 교목실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교, 직원, 근로학생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재정)** ① 교목실의 재정은 대학의 교비와 헌금 및 기부금으로 총당한다.

② 교목실 재정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.

**제5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